

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99,871,455	23,996,144
일반회계	725,308,821	21,759,265
특별회계	74,562,634	2,236,879
공기업특별회계	63,817,911	1,914,537
상수도공기업	34,478,482	1,034,354
하수도공기업	29,339,429	880,183
기타특별회계	10,744,723	322,342
의료급여기금운영	922,036	27,661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673,840	20,215
농공지구조성사업	5,986,904	179,60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65,609	10,968
수질개선	531,315	15,939
주택사업	1,875,112	56,253
기반시설	23,459	704
장기미집행	366,448	10,99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41,35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3,9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2022회계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군 비부담금은 다음년도 추경에 반영하며,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사업중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포함한다.